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 협약

2013. 10. 23.

서울특별시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1
제 2 조 (정의)	1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6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6
제 5 조 (소유권의 귀속과 관리운영권)	7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7
제 7 조 (서울특별시의 감독)	7

제 3 장 관리운영권과 자금조달

제 8 조 (관리운영권가치)	8
제 9 조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8
제 10 조 (자금재조달과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여)	9

제 4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11 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9
제 12 조 (관리운영계획)	10
제 13 조 (비상대응계획과 안전관리규정)	11



제 14 조 (보험가입)	11
제 15 조 (이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12
제 16 조 (관리운영위탁)	12
제 17 조 (관리운영위탁계약과 서울특별시의 관계)	14
제 18 조 (관리운영비)	14
제 19 조 (회계장부 등)	16
제 20 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16
제 21 조 (부대사업)	17
제 22 조 (부속사업)	17
제 23 조 (민원처리)	18
제 24 조 (이사회)	18

제 5 장 기준사업수익률과 운임

제 25 조 (기준사업수익률)	18
제 26 조 (운임의 정수)	19
제 27 조 (운임의 결정)	19
제 28 조 (운임의 조정)	20

제 6 장 서울특별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29 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21
제 30 조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의 조기상각)	21
제 31 조 (초과 사업수입의 사용)	22
제 32 조 (자금제공의 방법)	22

제 7 장 위험 배분에 관한 사항

제 33 조	(위험배분의 원칙)	23
제 34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3
제 35 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4
제 36 조	(불가항력사유)	24
제 37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협의)	25
제 38 조	(불가항력사유의 처리)	26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39 조	(협약기간의 만료)	26
제 40 조	(협약의 해지)	27
제 41 조	(협약 해지의 효과)	28
제 42 조	(협약의 종료에 따른 일반 규정)	29
제 43 조	(해지시지급금)	30

제 9 장 권리의 처분

제 44 조	(양도)	31
제 45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31
제 46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대한 승인)	32

제 10 장 분쟁의 해결

제 47 조	(분쟁의 해결)	32
제 48 조	(중재)	33

제 11 장 기타 사항

제 49 조 (협약의 변경)	33
제 50 조 (협약의 수익자)	33
제 51 조 (일부무효)	34
제 5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34
제 53 조 (비밀유지)	34
제 54 조 (통지)	34
제 55 조 (증거법)	35
제 56 조 (문서의 우선순위)	35
제 57 조 (협약의 효력)	36
부록 1 (출자자와 출자지분)	37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	38
부록 3 (관리운영비)	43
부록 4 (보험가입)	45
부록 5 (해지시지급금)	48



변경실시협약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하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각자를 "협약당사자"라 하고, 총칭하여 "협약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13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2005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구간)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하며, 이하 구체적으로 정의한다)을 위하여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이하 "기존실시협약"이라 한다)을 변경함으로써 효력발생일(이하 정의한다)의 직전일까지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기존실시협약을 적용하고, 효력발생일 이후의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용어는,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관리운영계획"이란 제12조(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2. "관리운영권"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기존실시협약 및 이 협약에 따라 이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써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말한다.
3. "관리운영권가치"란 제8조(관리운영권가치) 제1항에 따라 협약당사자들이

관리운영권가치로 합의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이란 특정 분기에 직전 분기말의 관리운영권가치에서 상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매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은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재된 바와 같다.
5.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이란 관리운영권가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직전 분기말까지 상각되고 남은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준사업수익률을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당해 분기의 말일까지 일할하여 곱한 금액을 말한다.
6. “관리운영비”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약기간 동안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자금차입에 따른 이자 기타 금융비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8조(관리운영비)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말한다.
7. “관리운영위탁계약”이란 제16조(관리운영위탁) 제1항에 따라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위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8. “관리운영자”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9. “기존실시협약”이란 제1조(협약의 목적)에서 정의된 의미와 같다.
10. “기준사업수익률”이란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비율로서 제25조(기준사업수익률)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1. “담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2. “민간투자법”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13. “민간투자법시행령”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한다.

1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란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정부가 공고한 계획을 말한다.
15. “법령”이란 민간투자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기타 사업시행자의 이 협약에 따른 이행이나 이 사업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조약 및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제정 또는 발령하는 규정, 명령, 기준 등을 말한다.
16.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와 이 협약 제21조(부대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부속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4항 단서와 이 협약 제22조(부속사업)에 따라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말한다.
18. “분기”란 1년을 3개월 단위로 나눈 기간을 말하며, 1분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분기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분기의 말일까지로 하며, 이 협약의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는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이 협약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 “불가항력사유”란 불가항력사유를 주장하는 계약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그러한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 “사업수입”이란 운임수입,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 및 기타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21. “사업시행자”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를 말한다.

22. “사업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이 협약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이 협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3. “사업운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이 협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분기에는 당해 분기의 초일로부터 이 협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할한 금액으로 한다)

나.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이 협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분기에는 당해 분기의 초일로부터 이 협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할한 금액으로 한다)

다.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

24. “영업일”이란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25. “운임”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한 사용료로서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시설**(부속사업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6. “운임수입”이란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운임의 총액(운임수입의 징수를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나 비용을 차감한다)을 말한다.

27. “유지보수”란 이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안전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관리운영 계획에 따라 이 사업시설을 유지관리, 보수 및 개량하는 활동을 말한다.

28. “이 사업”이란 이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구간)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유지보수 및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부속사업을 포함한다.

29. “이 사업부지”란 이 사업시설의 통과지역으로서 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30. “이 사업시설”이란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준공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과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 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상부부분, 부속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이 협약 체결일 이후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추가 또는 변경된 시설을 포함한다.
31. “이 협약”이란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2013년 10월 23일 체결된 이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말하며, 이 협약 체결 이후 수정, 변경 및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32. “자금제조달”이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출자자의 출자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며, 출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경우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나 그 주주 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33. “자금제공금액”이라 함은 제29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에 따라 특정 분기의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4. **자금차입**이란 사업시행자가 제3자로부터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35. “자금차입계약”이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출자자가 차주로서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와 출자자의 합병으로 사업시행자가 차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금차입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나 자금차입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금차입계약을 포함한다.
36. “주식매매계약”이란 출자자가 사업시행자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22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말한다.

37. “채권금융기관”이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와 합병전 출자자를 포함한다)에게 총채무를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말하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나 연기금을 포함한다.
38. “총채무”란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와 합병전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9. “출자자”란 부록 1 (출자자와 출자지분)에 출자자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40. “해지시지급금”이란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협약 제43조(해지시지급금)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41. “협약기간”이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가) 기존실시협약에 따른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나) 관리운영권가치가 전액상각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2. “효력발생일”이란 출자자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시행자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날로서 이 협약의 체결일(2013년 10월 23일)을 말한다.



제2장 기본 약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민간투자법과 이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2. 이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 이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4. 운임의 부과·징수
5. 부대사업의 시행
6. 부속사업의 시행

제5조 (소유권의 귀속과 관리운영권)

- 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가진다.
- ②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 ③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은 기존실시협약에 따른 운영개시일(2009년 7월 24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관리운영권은 이 협약이 종료되는 날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소멸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서울특별시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사업부지나 이 사업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을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법과 도시철도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 및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따라 이 사업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서울특별시의 감독)

- ①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과 이 협약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러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그 선정과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시설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관리운영권과 자금조달

주무관청의 요청으로 해당내용은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주무관청의 요청으로 해당내용은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제4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과 서울특별시가 제12조(관리운영계획)에 따라 별도로 승인한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업시설(필요한 경우 이 사업시설의 하부부분을 포함한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안전과 편의가 제공되도록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관리운영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제18조(관리운영비) 제7항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매 사업연도 3월말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의 실적 등을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과 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업시설의 정밀안전진단, 긴급유지보수 기타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18조(관리운영비) 제7항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이나 관리운영계획에 위반하여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서울특별시의 지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특정인에 대하여 이 사업시설의 이용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관리운영계획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기 위한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리운영계획에는 제13조(비상대응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응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관리운영계획에는 이 사업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점검·정비를 위한 계획과 그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에게 그 변경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에 승인 받은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조정이나 이 협약의 변경은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제13조 (비상대응계획과 안전관리규정)

-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6조(관리운영위탁)에 따라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위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과 위 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위 제3항을 이유로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4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관련 법령과 본협약 제4 (보험가입)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가입할 보험의 조건을 서울특별시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기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후 10일 이내에 보험증권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매 사업연도의 3분기 말 까지 위 제1항에 따른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서울특별시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사업의 복구비용 기타 손실을 부담한다. 제18조(관리운영비)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 사업의 복구비용 기타 손실은 사업운영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된 보험의 범위, 기간이나 기타 조건이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보험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 가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가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수입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이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 ① 사업시행자는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및 하자보수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위 제1항에서 정한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하부부분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하부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하자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관리운영위탁)



-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자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법 제15조(건설 및 운영위탁)에 준하여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 갱신,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 면허, 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칠 것
 2. 도시철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④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관리운영위탁계약의 내용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기타 관련 법령과

-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와 이용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관리운영자가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할 것
 4.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5. 관리운영자가 직접 서울특별시에게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할 것
 6.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직접 관리운영자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가 서울특별시의 감독에 적극 협력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7. 관리운영자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할 것(다만, 관리운영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청소업무 등 경미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8.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고나 손해 등에 대한 관리운영자의 책임을 명시할 것
 9. 관리운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제재 및 벌칙 조항을 규정할 것
 10. 관리운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입은 운임수입 손실에 대한 관리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할 것
- ⑤ 관리운영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이 협약의 협약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전부터 관리운영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관리운영위탁계약의 갱신 또는 새로운 관리운영자의 선임을 포함한다)을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서울특별시가 이전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까지 관리운영위탁계약의 갱신이나 새로운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 이전이라도 제18조 (관리운영비)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변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37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협의) 및 제40조(협약의 해지) 제3항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

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위탁계약의 갱신이나 새로운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제18조 (관리운영비) 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때 또는 이 협약의 해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자가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업무를 인계 받을 때까지 기존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승인하였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자 기타 수급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자의 업무를 감독하였다는 사유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7조 (관리운영위탁계약과 서울특별시의 관계)

-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게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리운영위탁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관리운영자와의 합의
 2. 서울특별시에게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리운영자에 대한 권리 행사나 지시
- ②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서울특별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기타 중요항 통지 또는 청구를 하거나 관리운영자로부터 그와 같은 통지, 청구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그러한 사실을 서울특별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위탁계약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관리운영자의 권리를 행사(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지권을 가지는 경우 그 해지를 포함한다) 또는 지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관리운영자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서울특별시가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한정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관한 협약당사자들의 합의에 관리운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관리운영비)

- ① 이 협약에 따라 사업운영비로 인정되는 관리운영비는 부록 3 (관리운영비)

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 ② 협약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5년 동안의 관리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5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3월말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예상 관리운영비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변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서울특별시가 이전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까지 관리운영위탁계약의 갱신이나 새로운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전의 관리운영비를 집행하되,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관리운영비가 변경된 경우 집행된 관리운영비와 변경된 관리운영비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비를 그 사용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비 지출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그 초과된 금액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가 감소됨이 없이 효율적인 경영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에 미달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미달된 금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 ⑥ 사업시행자가 부실한 경영이나 업무수행으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다음 5년 동안의 관리운영비를 확정함에 있어 그러한 요소를 반영하기로 한다.
- ⑦ 법령의 변경(제정과 개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제3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비용이 관리운영비로 인정될 것과 그 지급시기가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사유의 경우에는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서 서울특별시

가 부담하기로 정한 금액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 요구나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
2. 제15조(이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에 따른 업무(공사도급계약 기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상대방이 이행하기로 예정된 업무를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19조 (회계장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의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회계법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매년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한 경우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직접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거나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기타 중요한 계약(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의 공동 명의로 등록하고,

지적재산의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게 등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제1항의 지적재산을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이 부여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이 사업을 위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직접 또는 관리운영자가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적재산을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이 협약의 종료시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제1항의 지적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자가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유하는 지적재산에 관하여도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부대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한다.
- ③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대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22조 (부속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부속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의 시행과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

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부속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부속사업의 수입과 비용의 처리 기타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협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제23조 (민원처리)

사업시행자는 민원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민원으로 말미암아 추가 공사, 투자 또는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제3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민원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제35조(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내지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 (이사회)

- ① 사업시행자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이사 중 1인을 지명한다. 사업시행자는 출자자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대표이사 1인을 지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법령에 따라 이사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이 협약에
 2. 자금차입
 3.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제5장 기준사업수익률과 운임

주주권청의 요청으로 해당내용은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주무관청의 요청으로 해당내용은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제7장 위험배분에 관한 사항

제33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와 불가항력사유로 구분한다.
-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 위험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협약당사자가 부담한다. 협약당사자들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위험분담비율은 위험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③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위험은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어느 협약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 사업시행자의 해산
 - 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 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관리운영비의 증가, 운임수입의 감소,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관리운영계약에 따른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은 관리운영자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과 그 한도로 한다.

제35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권리처리)

- ①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가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불가항력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이 사업시설 또는 관리운영권을 몰수하거나 수용하는 처분을 한 경우
 2. 서울특별시가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②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제36조 (불가항력사유)

- ①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사유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와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구분한다.

②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위험물, 유물, 지장물의 발견(사업시행자가 이 협약 체결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위험물, 유물, 지장물 등의 발견은 제외한다)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3. 수도권에 소재한 지하철 또는 철도 산업의 연대 파업
4.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경제환경이나 이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아래 제3항에 정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이외의 불가항력사유

③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폭동, 테러, 사변, 내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제37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협의)


- ①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표시한 서면으로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통지(이하 "불가항력사유 분쟁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 분쟁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에 기재된 불가항력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
- ④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 분쟁통지를 한 경우, 불가항력사유의 발생 여부는 제10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결정한다.
- ⑤ 불가항력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불가항력사유의 처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와 같은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8조 (불가항력사유의 처리)

- ①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은 우선적으로 제14조(보험 가입)에 따라 가입된 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보전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이 사업시설의 복구비용 포함)로서 보험 가입의 대상이 아니거나 보험으로 보전되지 아니하는 비용과 손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된 비용과 손실: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의 20%를 부담하며, 서울특별시는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의 80%를 부담한다.
 2.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된 비용과 손실: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의 10%를 부담하며, 서울특별시는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의 90%를 부담한다.

제8장 협약의 종료

제39조 (협약기간의 만료)

- ① 이 협약은 협약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된다.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 ② 이 협약이 위 제1항에 따라 종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일 3년, 1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기간의 만료일에 이 사업시설(사업부지를 포함한다)을 서울특별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자와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에 참여시켜야 하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선정한 전문기관을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이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일의 3개월전 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그 수리·보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완료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를 수리·보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일 2년전부터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가 협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할 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그러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위 각 호의 의무 이외에 제42조(협약의 종료에 따른 일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위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함으로써 말미암아 서울특별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0조 (협약의 해지)

- ① 서울특별시에 의한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관리운영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관리운영권 설정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하게 이 사업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34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34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래 제7항에서 정한 치유기간 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아래 제7항에서 정한 치유기간 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5조(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아래 제7항에서 정한 치유기간 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제37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협의)에 따라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느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처분에 의한 해지: 서울특별시가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거나 관리운영권을 몰수 기타 수용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 협약은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지된다.
- ⑤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해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 서울특별시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이 협약은 해지된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를 인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가격,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며, 매매가격은 매수청구의 사유에 따라 제43조(해지시지급금)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 ⑥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협약당사자는 당해 해지사유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후에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⑦ 서울특별시가 위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위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해지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 협약당사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비나 자금제공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당해 해지사유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⑧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해지 통지를 위한 서면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1조 (협약 해지의 효과)

- ①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이 협약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종료된다.
- ②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관리운영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다만, 해지시지급금 지급청구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권리와 이 협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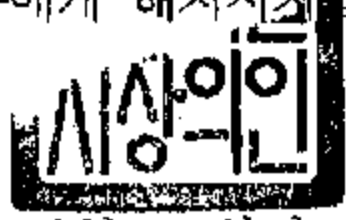
- ③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이 사업시설(사업부지를 포함한다)을 서울특별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자를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에 참여시켜야 하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선정한 전문기관을 이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수리·보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완료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를 수리·보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⑤ 이 협약의 해지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협약당사자는 위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점검과 수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협약의 해지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수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부담하며, 불가항력사유로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들이 동일한 비율로 위 비용을 부담한다.

제42조 (협약의 종료에 따른 일반 규정)

- ① 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서울특별시나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이 사업시설과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서울특별시에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후속조치를 취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을 서울특별시에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조건은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제39조(협약기간의 만료) 제2항 제2호 및 제41조(협약 해지의 효과) 제4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 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자산을 포함하여 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산을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협약의 종료시까지 사업운영비에 충당될 금원과 이 협약의 해지시 지급된 해지시지급금을 제외하며, 지적재산의 양도는 제20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이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운영, 유지보수, 운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전기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재고
 2. 기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모든 자산과 그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상의 모든 권리
- ④ 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기록, 시공도면, 관리운영계획서 기타 문서나 도면 일체를 훼손없이 그대로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시설에 관한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한 다음 서울특별시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⑤ 이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이 협약의 종료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3조 (해지시지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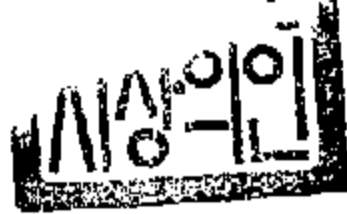
- ①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이 협약의 해지시까지 발생한 자금제공금액과 별도로 부록 5 (해지시지급금)에서 정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해지시지급금을 자금차입계약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③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한다.  
1. 제14조(보험가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가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14조(보험가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의 잔존 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한 잔존 총채무에 해당하는 금액
 4. 서울특별시가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잔존 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가 인수한 잔존 총채무에 해당하는 금액
- ④ 협약당사자들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⑤ 위 제4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위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의 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지정한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해지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협약당사자는 전문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며, 불가항력사유로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들이 동일한 비율로 위 비용을 분담한다. 만약,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결정한다.

- ⑥ 위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서면으로 협약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⑦ 서울특별시는 위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이 합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위 제6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서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기준사업수익률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
 2. 위 제1호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지시지급금 전액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 기준사업수익률에 연1%를 가산한 이자율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

제9장 권리의 처분

제44조 (양도)



민간투자법이나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이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제45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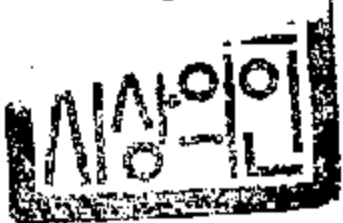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서면통지(이하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라 한다)로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이하 “대체사업자”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추천할 수 있다.

1. 제34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34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제40조(협약의 해지) 제7항의 치유기간 내에 그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② 서울특별시는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게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대체사업자를 수용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와 서울특별시가 대체사업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치유하기 위한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 ④ 위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서울특별시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또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대한 승인)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변경을 포함한다)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최초 자금차입계약 체결시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계획에 따른 출자자와의 합병, 감자 및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10장 분쟁의 해결

제47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들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협약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따라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제48조(중재)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으로서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8조 (중재)

- ① 협약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따라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 ②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 ③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각자 중재인 1인을 각 선임한다.
- ④ 나머지 중재인 1인은 중재개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각 선임한 중재인 2인의 합의로 선임한다.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각 선임한 중재인 2인 사이에 나머지 중재인 1인의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하기로 한다.
- ⑤ 기타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과 중재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1장 기타 사항

제49조 (협약의 변경)

- ①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들 전원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의하
여만 변경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협약 체결 이후에 결정되도록 예정된 수치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를 필요 없이 이 협약에서 예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때에 효력을 가진다.
- ③ 이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이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이 협약의 변경 제안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 (협약의 수익자)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적법한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5조 (사업시행자의 변경)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와 그 적법한 승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일부무효)

이 협약의 일부 규정이 위법, 무효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2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이 협약과 이 협약에 따라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약정들은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합의임을 확인하며,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기존실시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협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의사표시나 합의에 우선한다.

제53조 (비밀유지)

- ① 협약당사자들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이 협약의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조건과 이 협약을 이행하면서 얻은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비밀로 유지하고, 상대방 협약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비밀정보
 2. 상대방 협약당사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비밀정보
 3. 법령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비밀정보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를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비밀정보
 5.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협약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국회 기타 이 사업 관련 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관리운영자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 사업시행자의 수급인, 수임자 및 이들의 하수급인에게 관련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4조 (통지)

- ① 이 협약에 따른 통지나 문서의 도달은 다음의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수신 : 서울특별시장

참조 : 교통정책과장

전화 : 02-2133-2233

팩스 : 02-2133-1048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88-1(종합관리동 5층)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수신 : 대표이사

참조 : 경영지원팀장

전화 : 02-2656-0010

팩스 : 02-2656-0045

-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 협약에 따른 통지는 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협약당사자의 주소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소에 도달한 때에, 팩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지가 도달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준거법)



- ① 이 협약과 이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와 서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 ② 이 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6조 (문서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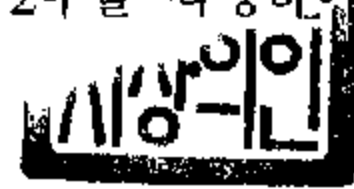
- ① 이 협약과 이 협약에서 언급된 계약, 기타 서류 사이에 내용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 이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에 모호함이 있거나 그 내용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결한다.

1. 이 협약
2.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4. 도시철도법
5. 철도사업법
6.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2010)

제57조 (협약의 효력)

- ① 이 협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된 때에 종료한다.
- ② 위 제1항에 따른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기존 실시협약에 따른다.
- ③ 이 협약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부록은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대표이사 정연국



부록 4. 보험가입

1. 일반사항

가. 정의

모든 용어들은, 이 부록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이 협약 본문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나. 보험증권의 유지

- (1)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협약기간이나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따라 부보되어야 하는 기간 동안 보험증권을 취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2) 이 협약에 따라 부보되어야 할 보험과 관련하여 특정 보험종목이 소멸되거나 특정 보험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회 환경의 변화 또는 보다 향상된 보험 등이 발생할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확정된 보험종목, 부보금액 등의 조정을 서울특별시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협약당사자들은 이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3) 사업시행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정 보험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부록상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험종목, 부보금액 산출근거는 이 협약에 따라 확정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 (5) 이 사업과 관련한 보험이 확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가입되는 경우, 보험의 부보금액은 가입시점의 재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적용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험금의 처리

이 협약에 명시된 사항들과 다른 경우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보험금의 처리에는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된 이 사업에 손해

발생시,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 작업의 재건설 또는 복구를 하겠다는 사실을 서울특별시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통보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험금 수령에 따른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한다. 손해에 관련된 보험금 수령을 받게 될 때, 사업시행자는 동 금액을 별도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이 사업의 복구에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금액에 상당하는 대체담보를 공탁할 수 있다. 이상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손해 입은 공사를 재건설하거나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수령된 보험금을 별도의 예금계좌에 예치한다. 다만, 이러한 예금계좌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및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2. 보험료 확정에 따른 일반사항

협약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종목은 제3항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협약기간 중 보험가입조건

구 분	협약기간 중 보험 유지 조건
가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토목공사물 보험 - 근로자배상책임 보험
담보조건	<p>① 재물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9호선 1단계구간 상부부분 시설물 및 철도차량에 대한 피해보상 - 보상한도 : 1사고당 8,995억원(2003.1.2 불변가) - 자기부담 : 자연재해 및 차량 1사고당 5천만원 기타 1사고당 1천만원 <p>② 기업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보험사고에 따른 예정이익상실담보 - 보상한도 : 예상 운영수입 - 자기부담 : 1사고당 30일 <p>③ 제3자영업 배상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운영기간 중 제3자에게 사고로 발생한 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 - 보상한도 : 1사고당 500억원 - 자기부담 : 1사고당 1백만원(재물손해에 한함) <p>④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현장 및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 보상한도 : 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
담보지역	9호선 차량기지 및 901역~925역 전구간 및 그 주변
보험기간	운영기간 중 (연간단위 계약)



시상인인

주1) 하부구조물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사업시행자는 상기 보험 유지조건에 상응하는 보험을 매년 가입해야 한다.

